

#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장 공개모집 재공고

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「계약처장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6. 6. 16

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

## 1. 모집예정 직위 및 인원

모집분야	임용신분	인원	근무 예정지
계약처장 (개방형 직위)	계약직 1급	1	본사 계약처 (대전광역시)

## 2. 담당예정 직무

- 철도사업 공사·용역·구매분야 입찰공고,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
- 철도사업 계약분야 기준 제정 및 개정
- 철도사업 계약방법 결정, 발주계획 수립 등
- 철도사업 계약관련 대가 지급
-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심의

## 3. 임용기간

-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

## 4. 응시자격요건

-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채용 결격사유[별지]에 해당하지 않으며,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### 가. 학력기준

- (1) 학사학위 소지자 : 계약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
- (2) 석사학위 소지자 : 계약분야 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
- (3) 박사학위 소지자 : 계약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
### 나. 자격증 기준 : 해당사항 없음

### 다. 경력기준

- (1)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: 공무원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계약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자
- (2) 민간경력 : 계약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## 5. 보수수준 : 공단 연봉제 보수규정 준용

## 6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컬러사진 부착)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  - 이력서 1부(자기소개서는 A4용지 3매 이내)
  - 직무수행계획서 1부(A4용지 5매 이내)
  -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  -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- ※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.or.kr>)를 참조하시고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재개발처 인사부(042-607-36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7. 제출기간 및 장소

- 제출기간 : 2016. 6. 16(목) ~ 2016. 6. 23(목) 18:00까지
- 제출장소 : (34618)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
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실 인재개발처 인사부(24층)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 
(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## 8. 전형방법

- 전형방법 :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
- 전형일정 : 전형단계별 합격자에게 별도 통보 (서류심사 후, 면접시험 후)
- 면접심사 :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(면접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)

## 9. 기타사항

-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건강검진,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거나,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  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(연락처 포함)이 있어야 하며, 원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- 공고문에 제시된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공지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-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제4항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간 보관하며, 이 기간 동안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합니다.

[별지]

<인사규정 제12조>

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(개정 2012.10.25., 2014.10.29.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(징병검사, 징집·소집, 입영, 군복무 등)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(신설 2012.10.25.)